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합102567 판결 [입찰보증금 청구]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1577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합102567 판결

전 문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N

변론종결 2017. 10. 11.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11. 1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조달청은 2016. 11. 4.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수요의 '750톤급 국가어선지 도선 3척 건조'(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달물자구매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조달청에 납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2016. 11. 11. 낙찰금액 42,300,000,000원에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조달청은 2016. 11. 29. 피고에게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니 2016. 12. 9.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사업계약을 체결하라는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조달청은 2016. 12. 15. 피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고에 귀속되어야 하는 입찰보증금 2,115,000,000원(낙찰금액의 5%)을 2017. 1. 2.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마. 이 사건과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입찰보증금 상당액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2,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이 사건 입찰보증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그 불이행 시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참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은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피고와 같은 중소 조선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② 피고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여 금융기관의 협조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조달청은 피고가 계약체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새로운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불과 약 1개월 가량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었을 뿐인 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낙찰자가 계약체결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외에도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제재수단을 확보하고 있고, 실제 조달청장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입찰보증금 2,115,000,000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1,410,000,000원(= 2,115,000,000원 × 2/3)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액인 이 사건 입찰보증금 중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한 1,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입찰보증금 납부기한으로 통지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1. 3.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정한 판사 김재학 판사 윤성현

별지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조(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 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끝.

1)갑 제3호증의 2